

#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5. 4.  
제안자 : 안산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'95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시흥시 수암동, 장상동, 장하동 일원과 시흥시 화정동 일부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고 수암동, 장상동, 장하동 지역에 대한 행정 운영동의 설치 승인에 따라 1개의 동사무소가 신설되어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신설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

기관명	소재지
안산동	안산시 수암동 441-9

184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지방자치법 제6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- 제1항 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, 면,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,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시,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,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, 면, 동에 있어서는 그 시, 군의 조례로 정한다.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.
- 제2항 - 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#### 나. 소요예산 : 없음.

#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소재지) "별표" 중 "대부동" 다음에 "안산동"을 신설하고  
"안산동"의 소재지는 "별지"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별 표)

##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

기 관 명	소 재 지
안 산 동	안산시 수암동 441-9

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	개정(안)	
기관명	소재지	기관명	소재지
안산시청	( 생 략 )	안산시청	( 현행과 같음 )
일동~ 대부동	( 생 략 )	일동~ 대부동	( 현행과 같음 )
	( 신 설 )	안산동	안산시 수암동 441-9